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
진흥에 관한 조례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38호
- 나. 제출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·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수집계획의 수립, 수립대상 및 수집 방법(안 제4조~제6조)
- 라. 마을공동체기록관 및 주민기록단의 운영(안 제7조~제8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과 관리 및 활용(안 제9조~제10조)
- 바.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 등(안 제11조~제17조)

4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·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,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그러나 2019년 12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이전까지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·관리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,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의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음.
 -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개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2019년 12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수집 주체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¹⁾으로도 확대되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

1)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의) 5. “영구기록물관리기관”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,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,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.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지역의 민간기록물 수집 주체로서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명시²⁾하였음.

○ 주요내용은

- 본 제정 조례안은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민간기록의 자료 수집, 보존 관리,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집계획의 내용, 수집대상 및 방법, 마을공동체기록관 조성·운영, 주민기록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와 관련하여 수집·관리되는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으로 기록물 관리기관이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및 다양성을

2) 제46조의2(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)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,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 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12. 3.]

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·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- 민간기록물은 그 생산 주체와 기록 형태가 다양하고, 수집된 기록물의 보존·활용 등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18740호, 2022. 1. 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·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·취득한 기록정보 자료(공공기관이 소유·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)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기록물”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(行政博物館)을 말한다.
3. “기록물관리”란 기록물의 생산·분류·정리·이관(移管)·수집·평가·폐기·보존·공개·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.
4. “기록물관리기관”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, 영구기

록물관리기관,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.

5. “영구기록물관리기관”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,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,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43조(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)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·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(이하 “민간기록물”이라 한다)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,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.

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46조의2(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)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,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